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4. 3. 3.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2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2월 23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102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04. 3. 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가. 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수급자의 자활능력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등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안 제2조 관련)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포함한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국고보조금, 생업자금 및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역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함.
- 기금의 용도(안 제3조 관련)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역, 자활지원사업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
- 기금운용심의(안 제5조 관련)
 - 기금운용 심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영등포구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금사업,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
- 기금관리공무원(안 제11조 관련)
 -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창수)

기금의 주요 재원은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과 기타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는 바, 출연금 조성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심의시 출연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확보되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일시에 기금을 확보하기보다는 연도별로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역 및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 등 비용 외 3가지 사업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금의 목적에 상응한 것으로 보여지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심의·의결 등의 기능이 유사한 영등포구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신하도록 한 것은 효율적인 운용과 경험자의 의견을 듣고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여겨지며,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서울시 준칙안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사항을 적절히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88
----------	----

제출년월일 : 2004. 2. 1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매우 미미한 실정임.
- 나.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기금의 조속한 조성·활용이 시급함.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자발적인 기금 재원의 조성을 위한 노력에 기여

2. 주요골자

- 가. 기금의 조성(안 제2조 관련)
 - 기금은 일반회계 및 서울특별시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생업자금 및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역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함.
- 나. 기금의 용도(안 제3조 관련)
 -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역,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역 받은 자금의 이차 보전,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으로 함.
- 다. 기금운용심의(안 제5조 관련)
 - 기금운용 심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영등포구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1) 동 조례 제3조의 기금사업의 용도
 -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
 - (3) 기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라. 기금관리공무원(안 제11조 관련)

-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
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나. 예산조치 : 2004년도부터 매년 2억씩 10억 일반회계 출연
(2004년도 분은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다. 입법예고(2003.11.5. ~ 2003.11.24.)결과 제출된 의견(전화 제출 - 양평2동)

○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제3항

대여자금의 대부율을 연 4%에서 연 3%로 하향조정 요구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구성된 자활공동체의 자활자립을 위한 기금의
대부이율로는 높다고 판단됨.

○ 조치내용 - 반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구성된 자활공동체의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한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대부율을 연 3%로 하향 조정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
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영등포구의 출연금
2. 서울특별시 또는 영등포구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 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 ④기금 및 이자 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유사기능의 영등포구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대신한다.

1. 동 조례 제3조의 기금사업의 용도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구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다만, 제2호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율을 적용한다.
-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